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1709 제출연월일: 2024. 7. 12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 중 교원이 "그밖의 정치단체"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(헌법재판소 2020. 4. 23. 선고, 2018헌마551 결정)함에 따라,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지방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"그 밖의 정치단체"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특정정당"을 "특정 정당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"타인"을 "다른 사람"으로, "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"를 "정치단체"로 한다.

-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단체(이하 "정치단체"라 한다)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.
- 1. 「정당법」에 따른 정당 및 당헌ㆍ당규에 따른 정당의 조직
- 2. 「정당법」에 따른 창당준비위원회
- 3. 「정치자금법」에 따른 후원회
- 4.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른 선거운동기구
- 5. 그 밖에 특정 정당이나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(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), 그 선거의 당선인·후보자·예비후보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 혀 제57조(정치운동의 금지) ① 공 제57조(정치운동의 금지) ① 공 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 | 무원은 다음 각 호의 단체(이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 하 "정치단체"라 한다)의 결성 입할 수 없다. 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. 1. 「정당법」에 따른 정당 및 당헌 · 당규에 따른 정당의 조직 2. 「정당법」에 따른 창당준 비위원회 3. 「정치자금법」에 따른 후 원회 4.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른 선 거운동기구 5. 그 밖에 특정 정당이나 선 거로 취임하는 공무원(국가공 무원을 포함한다), 그 선거의 당선인 • 후보자 • 예비후보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 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 ② ----- 특정 정 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당 -----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

어느	하나에	해당하는	행위를
하여기	서는 아니	l 된다.	

- 1. ~ 4. (생 략)
- 5. <u>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</u>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
- ③・④ (생 략)

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<u>다른 사람</u> - <u>정치단체</u>

③・④ (현행과 같음)